

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상훈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 
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현행 별표2의 급수업종은 2012년 동 조례 개정을 통해 ‘업무용’을  
‘공공용’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, 동 조례 제19조제2항 사설소화용  
급수설비에 대한 급수업종의 경우 당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 
못하여 현재까지 ‘업무용’으로 적용하고 있는 바, 이를 ‘공공용’으  
로 적용하여 수도요금 납부처리의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

□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가. 사설소화용 급수로 사용한 수돗물의 사용요금 납부기준을 ‘공공용’  
으로 적용함(안 제19조제2항)

나. 「수도법」 시행령 제51조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함(안 제  
4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)

다. 일부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